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0호
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최근 데이트폭력, 스토킹,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고,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외에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하여 규정한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(법률 제16086호, 2018. 12. 24. 공포, 2019. 12. 25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,
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,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